



동작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부구청장 방침 제141호(2015 .9. 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9. 10. ~ 9. 30.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